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(5급 1명, 7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5. 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하부조직 중 소프트웨어융합팀 및 군수지능화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, 양성평등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,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5. 00. ~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3항 중 “제21호까지”를 “제21호까지, 제25호 및 제26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1호”를 “제24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

15.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

제4조의2제11항제1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5항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7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2. 국방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

13. 국방 사이버기술 발전 및 사이버보안 협력에 관한 업무

제21조제1항 중 “2025년 6월 30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7 중 1. 제2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5년 6월 30일) “2025년 6월 30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국방부령 제10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

항 중 “2025년 2월 28일”을 “2026년 2월 28일”로 한다.

국방부령 제109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

항 전단 중 “2025년 7월 31일”을 “2027년 7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·② (생략)	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획관리관은 「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<u>제21호까지</u>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제21호까지, 제25호 및 제26호</u> -----.
④ 계획예산관은 「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7조의2제3항 제22호부터 <u>제31호까지</u>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제24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1호</u> -----.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⑧ ----- ----- -----.
1. ~ 13. (생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4.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15.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</u>
⑨·⑩ (생략)	⑨·⑩ (현행과 같음)
⑪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⑪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<u>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</u>	<u><삭 제></u>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
⑫ ~ ⑭ (생 략)	⑫ ~ ⑭ (현행과 같음)
⑮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⑮ ----- ----- -----.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2. 국방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</u> <u>및 제도의 발전</u>
<u><신 설></u>	<u>13. 국방 사이버기술 발전 및 사</u> <u>이버보안 협력에 관한 업무</u>
12. (생 략)	14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⑯ (생 략)	⑯ (현행과 같음)
<17>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국방사이버보안 평가 업무</u>	<u><삭 제></u>
12. <u>국방정보체계 획득 시 안전</u> <u>성, 신뢰성 기준의 수립 및 검</u> <u>증</u>	<u><삭 제></u>
⑮ 삭 제	
⑰ (생 략)	⑰ (현행과 같음)
제21조(한시정원)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	제21조(한시정원) ① ----- ----- -----

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<u>2025년 6월 30일까지</u>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.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<u>2026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국방부령 제10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	국방부령 제10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팀은 <u>2025년 2월 28일까지</u> 존속한다. ② ~ 제3조 (생략)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6년 2월 28일</u>-----. ② ~ 제3조 (현행과 같음)
국방부령 제109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	국방부령 제109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융합팀 및 군수지능화팀은 <u>2025년 7월</u>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7월 3</u>

31일까지 존속한다.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및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데이터정책담당관이 보좌하고,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군수기획과장이 분장한다.	1일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7]

국방부 공무원(군인제외) 한시정원표(군인제외) 한시정원표(제21조
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 1. 제2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<u>존속기한: 2026년 12월</u> <u>31일</u>) • •	• 총 계 • •	• 총 계 • •	